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 분야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별정직 5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7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9. 99. ~ 9. 9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5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

별표 7 중 총계 “999”를 “1,000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7”을 “8”로 하며, 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 2 다음에 “청년보좌역(5급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7의2 중 총계 “1,003”을 “1,004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7”을 “8”로 하며, 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 2 다음에 “청년보좌역(5급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주택토지실) ① ~ ⑭ (생략)	제8조(주택토지실) ① ~ ⑭ (현행과 같음)
⑮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⑮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1.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</u>
<u>11.</u> (생략)	<u>12.</u> (현행 제11호와 같음)
⑯ ~ ㉔ (생략)	⑯ ~ ㉔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999</u>	<u>1,000</u>	+1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7</u>	<u>8</u>	+1
·	·	·	
·	·	·	
<u>청년보좌역(5급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의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,003</u>	<u>1,004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별정직 계	<u>7</u>	<u>8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청년보좌역(5급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